캘리포니아 자발적 친자 확인 신고(VDOP) - 철회

DCSS 0915 (Korean) (01/01/2020)

이 양식 뒷면의 지침과 자주 묻는 질문 을 참조하세요. 자발적 친자 관계 신고서(VDOP)에 서명한 부모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한 VDOP를 철회(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아동양육지원서비스국(DCSS), 부모 기회 프로그램(POP)에 제출한 VDOP에 의해 생성된 법적 기타 부모 관계가 철회(취소)됩니다. **VDOP를 철회해도 출생 증명서에서 부모의 이름이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치를 취하려면 법원 명령과 공중보건부 생명기록국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보

이름	성

사회보장번호(아래 개인정보 처리방침 참조)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사회보장번호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 번호	생년월일

요청자의 우편 주소(번호 및 거리)	아파트/자리/유닛	시	주	우편번호

요청자의 직통 전화 번호	요청자의 이메일 주소

저는 아래 나열된 자녀의 VDOP 양식에 서명했습니다

이름	성	생년월일	VDOP가 서명된 날짜

저는 아래 나열된 VDOP에 서명한 다른 부모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반송 영수증 요청)

다른 부모의 이름	다른 부모의 성

다른 부모의 우편 주소(번호 및 거리)	아파트/자리/유닛	시	주	우편번호

이 양식은 법적 문서입니다 - 이 양식을 읽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서명하지 마세요

- 본인은이 공증된 캘리포니아 VDOP 철회 양식의 사본이 VDOP에 서명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추적 기록 사본 또는 반송 영수증 원본을 VDOP에 서명한 다른 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로 첨부합니다.
- 본인은 VDOP을 통해 생성된 법적 부모와 자식 관계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모든 지침을 준수하고 마지막 부모가 VDOP에 서명한 날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이 양식을 DCSS POP에 제출하면 VDOP가 취소됨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실행 날짜 _____ 귀하의 서명 _____

개인정보 고지 - 1977년 정보 관행법(민법 §1798.17) 및 1974년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미국 연방법 §552a(e)(3), §7 참고)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할 때 이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요청된 정보는 아동양육서비스국(DCSS) 및 지역 아동양육기관에서 신원 확인 및 친자 관계 설정 또는 취소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는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 복지 기관, 법원 및 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DCSS에 취소 신청 접수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는 다음입니다: 주 코디네이터, DCSS의 부모 기회 프로그램, 전화: (866) 249-0773. 이 개인 정보의 요청 및 유지 관리를 승인하는 법적 근거로는 미국 연방규정 제42장 §666(a)(13), 가족법 §§7570-7581 및 §17212을 포함합니다. 자발적 친자 관계 신고서 및 친자 관계 철회 신고서 사본은 DCSS의 기밀 파일에 보관됩니다. 신고자는 (866) 249-0773으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자신이 제출한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THE REQUESTOR MUST HAVE THEIR SIGNATURE WITNESSED BY A NOTARY PUBLIC (요청자는 공증인의 입회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A notary public or other officer completing this certificate verifies only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who signed the document to which this certificate is attached, and not the truthfulness, accuracy, or validity of that document.

State of _____ County of _____

On _____ /_____/_____ (MM/DD/YYYY) Before me:

_____
(name and title of the Notary)

Personally appeared _____

_____

who proved to me on the basis of satisfactory evidence to be the person(s) whose name(s) is/are subscribed to the within instrument and acknowledged to me that he/she/they executed the same in his/her/their authorized capacity(ies), and that by his/ her/their signature(s) on the instrument the person(s) or the entity upon behalf of which the person(s) acted, executed the instrument.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the foregoing paragraph is true and correct. WITNESS my hand and official seal.

Notary Signature _____

(SEAL)

자발적 친자 관계 신고(VDOP) - 철회

DCSS 0915 (Korean) (01/01/2020)

지침

1.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자체로 VDOP 해지 양식을 작성하세요. 양식은 타자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에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VDOP에 서명한 다른 부모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서명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VDOP에 서명한 다른 부모에게 귀하가 해당 문서의 취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한 VDOP철회 양식의 사본을 VDOP에 서명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우편 발송 증명 필요****, 보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다른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우편물 발송 증명(추적 기록 사본 또는 반송 영수증 원본)이 있으면 이를 VDOP 철회 양식에 첨부하여 아동양육비 서비스국(DCSS), 부모 양육 기회 프로그램(POP)에 보내세요.*
4. *서명 및 공증을 받은 원본 양식만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California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Parentage Opportunity Program
   P. O. Box 419070
   Rancho Cordova, CA 95741-9070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VDOP에 서명한 부모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마지막 부모가 싸인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VDOP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하려는 서명자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양육권, 방문권 또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즉, VDOP에 서명한 부모 중 한 명은 60일 기간 동안 VDOP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의 서명만 필요하지만, 함께 거주하고 주소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VDOP 철회를 요청하는 부모가다른 부모에게 우편으로 정식 통지를 **해야 하며 우편 발송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VDOP에 서명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철회 시기는 부모가 18세가 되거나 독립한 후 둘 중 먼저 발생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로 연장됩니다.

VDOP 해지 양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양식을 작성하여 DCSS POP에 제출하면 이전에 서명한 VDOP를 제출하여 생성된 법적 부모와 자식 관계가 **취소됩니다**. VDOP를 취소하려면 모든 지침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VDOP 해지 양식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VDOP 철회 양식 원본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마지막 보호자가 VDOP에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DCSS POP에 보내야 합니다.

이 양식 및/또는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주 POP 코디네이터에게 무료 전화(866) 249-0773 또는 이메일 askpop@dcss.ca.gov로 문의하세요.

원본 서류는 원본 VDOP에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VDOP에 서명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해방일 또는 18세 생일(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0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상태로 DCSS POP에 접수되어야 합니다.